

case
5

스테인리스 강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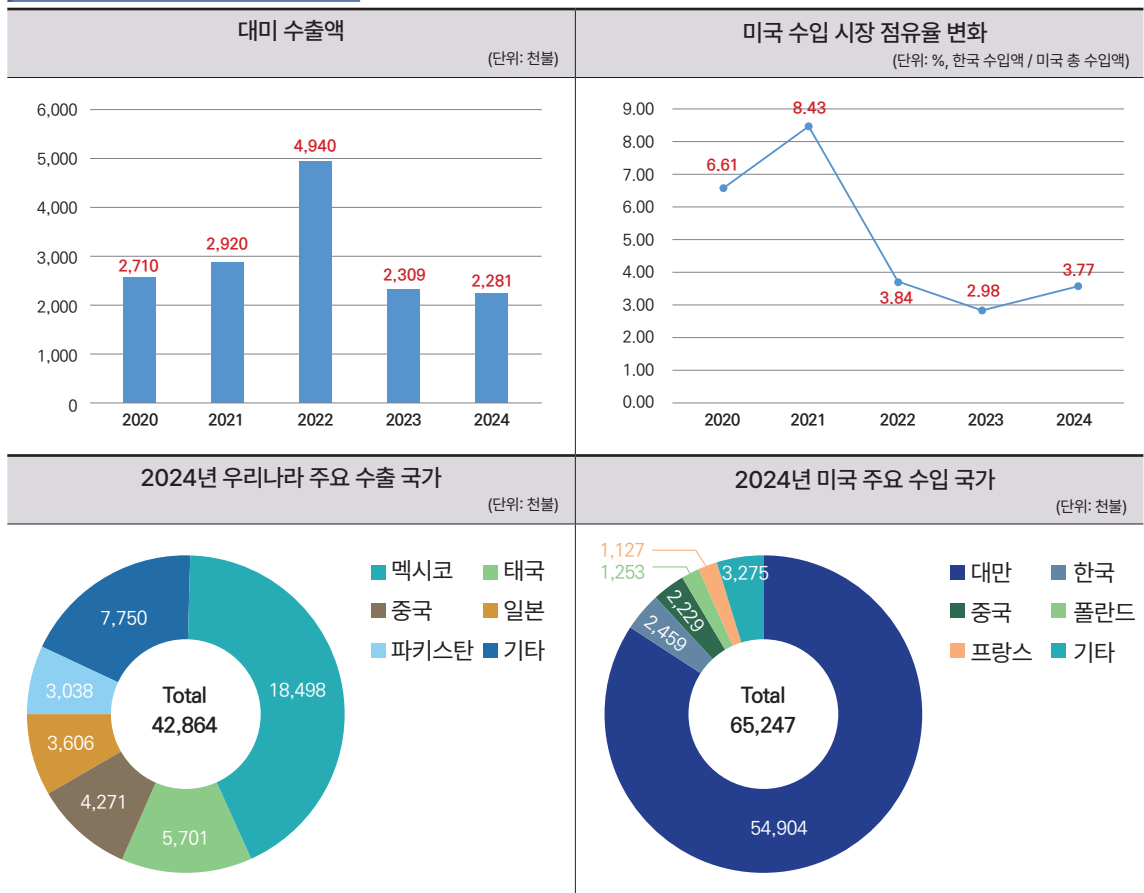
사례명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4299 (2023.08.22.)
사실관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중국으로 보내어 열간압연·냉간압연, 열처리, 폴리싱,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시트로 완성 후 미국으로 수입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CBP는 중국에서 수행된 열간압연, 피클링, 어닐링, 냉간압연 등의 공정이 슬래브 형태의 스테인리스강을 강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인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219.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219.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4299 (2023.08.22.)

사실관계

요청자	Millennia Stainless Inc.	
제품	제품명	• 연마 및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강판 (Polished and Coated Stainless Steel Sheet)
	구성	• Grade 304 또는 430 스테인리스강 - 두께: 0.45mm ~ 3.42mm - 폭: 최대 1,524 mm - 니켈 함량: 0.21% ~ 8.02% - 기준 규격: ASTM A240/480
	용도	• 가전제품, 실외용 그릴 등 최종 제품 생산용
	완제품 HS Code	• 7219.90.0025 (니켈 함량 0.5% 초과) • 7219.90.0080 (니켈 함량 0.5% 이하)

제조과정



상세공정 인도네시아

- 스테인리스강 용해 및 주조를 통해 슬래브 제조
- 중국으로 수출

중국

- 열간압연(hot-rolling)
- 피클링(pickling) 및 어닐링(annealing)
- 냉간압연(cold-rolling)하여 코일 형태로 성형
- 연마(polishing)
- 시트 형태로 절단(slitting)
- 한쪽 면 PVC 코팅 및 반대쪽 면 지문 방지(anti-fingerprint) 코팅
- 길이 절단(cut-to-length)
-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국가이며, 이는 물품의 명칭, 성질 또는 용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을 의미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판정 결과

- ☐ CBP는 중국에서 수행된 열간압연, 피클링, 어닐링, 냉간압연 등의 공정이 슬래브 형태의 스테인리스 강을 강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인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기타 의견

- ☐ 해당 물품(HTSUS 7219.90.0025 및 7219.90.0080)은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및 9705)』에 따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무역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기본 분류에 더해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 U.S. Note 20 to Subchapter III, Chapter 99, HTSUS에 따라 HTSUS 7219.90.0025 및 7219.90.0080에 분류되는 중국산 물품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HTSUS 7219.90.0025 및 7219.90.0080 세번과 함께 9903.88.15도 함께 신고해야 함
- ☐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결론

- ✓ 중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열간·냉간 압연, 피클링, 어닐링 연마 및 코팅 등)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함
- ✓ 따라서 본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 중국산의 경우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시사점

- 슬래브는 중간재로 최종 제품 형태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국에서의 압연 및 표면 처리 공정이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음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4299 (2023.08.22.), <https://rulings.cbp.gov/ruling/N334299>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